

조세에 대한 법규 각 新문서와 일 부 중요政策의 업데이트

2019년3월



Content

이런 문서중에,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는 최근 일부 새로운 법규문서와 조세에 대한 중요 정책 안내들을 고객님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 다음:



과학 기술 기업에 대한 의령서 제 13/2019/NĐ-CP 호,



최소규모의 기업에 적용해준 회계 제도,



기술이전활동에 대한 조세정책,



전자영수증은 집계표와 같이 삽입 문제,



투자 진행단계에 예금에 대한 법인 소득세의 우대문제;

1. 과학 기술 기업에 대한 의령서 제 13/2019/NĐ-CP 호,

정부는 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의령서 제 13/2019/NĐ-CP 호(의령 13호)를 발급해서 과학기술기업의 여러 우대정책 예, 법인소득세의 감-면, 신용우대, 토지-해면의 임대료가 감-면 등...을 구체로 반영한다.

13호 의령서는 2019/03/20 일부터 발효한다. 그에 따라 적용대상들은 베트남법규에 의한 설립, 활동하고 과학,기술의 결과부터 생산, 영업, 서비스의 활동들을 지행하는 기업들을 포함한다.

본 의령서의 안내에 의하면 과학, 기술 기업의 증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기업법에 의한 설립되고 활동한다;



법규에 따른 실권 기관들의 평가, 심사, 확인된 과학기술의 창조혹 그의 결과를 응용한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부터 형성된 상품의 생산 영업에 관련된 매출금이 총 배출액의 최소 30%로 달성한다.

그러나 새로 창업된 기업인 경우엔 상기의 a) 및 b) 조건만 만족되면 과학기술기업 으로 증인된다.

의령서13호는 과학기술기업의 법인소득면세우대는 4년동안 면세, 다음 9년후에 50%로 감세를 (과학기술부터 형성된 상품의 생산 영업에 관련된 매출금이 총 배출액의최소 30%로 달성한 조건을 보장된다) 받게 된다.

조세관련 우대외에, 새 의령서도 다른 우대로서 토지임대료가 면감, 신용우대(차입된 무역은행에 차입금이자 최대 50%로 적용)등을 과학기술기업들에 적용된다.





2. 최소규모의 기업에 적용해준 회계제도,



재정부는 최근에 통지서 제132/2018/TT-BTC호를 2018/12/28일에 발급해서 (“통지132”) 최소규모의 기업에 적용해준 회계제도를 안내해준다. 구체로, 통지엔 회계장부기록 방법, 각종 양식, 보고의 시스템, 회계조직 등...안내된다. 최소기업들의 초기에는 현행 조세에 의한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된다.



새로운 회계년도 혹은 2019/04/01 일 후에, 최소기업들이 회계제도를 통지132 (2019/02/15일부터 발효)의 규정들을 집행한다.

3. 기술이전활동에 대한 조세정책,



2018/11/20 일에, 세무총국은 문서 제 4574/TCT-CS 호를 발급해서 외국 기업부터 베트남 기업에 이전해준 "기술정보" 활동에 대한 세무정책을 안내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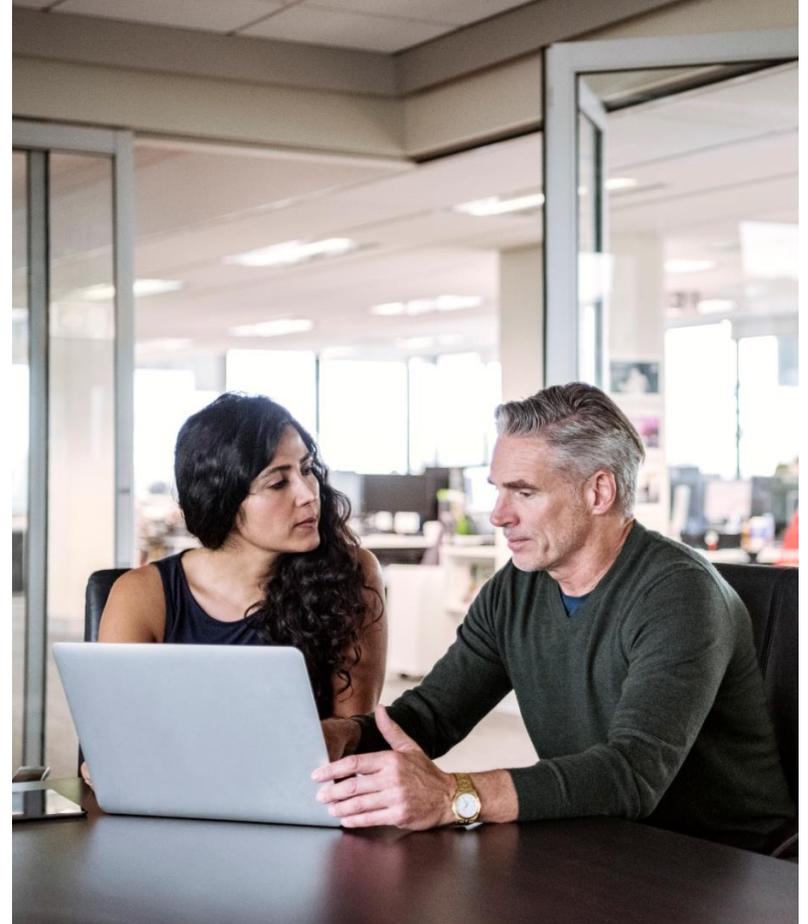
구체로, 문서중 안내에 의 하면 "기술정보"의 이전은 기술이전의 활동으로 보고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현행 법규에 따라 오직 기술소유주 혹은 조직이나 개인이 기술소유주의 허락을 받은 경우만 기술이전을 가능하다. 그에 따라, 외국기업은 베트남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준 경우에 만약, 외국법규이 의해 이전 기업의 기술권등록을 강요하 지않으면 기술이전 접수된 베트남기업이 서류, 원서의 공급혹 그 이전기술의 주인된 외국기업으로 증명하 는 각서를 해야한다.



문서 4574 중의 답변 의견은 그 문제에 관련된 세총국의 그전에 문서제 231/TCT-CS 호의 2018/01/15일의 내용을 더 구체화해준다.



4. 전자영수증은 집계표와 같이 삽입한다,



2019/01/18일에, Hà Nội 성 세무서는 문서 2973/CT-TTHT 로 전자송장과 상품리스트 를 같이 작성해준것을 발표한다.

Hà Nội 성 세무서에 의하면 한 기업은 전자송장을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해준때에 판매된 상품의 전부 리스트로 작성해서 전자영수증내 모든 정보들을 법규처럼 필요시에 충분히 검토, 사용할수 있다. 그때에, 판매된 상품들의 리스트를 필수로 전자송장에 기록해야 하고 삽입된 종이에 집계분리할 수 없다.

기업은 전자송장을 종이로 바귀준경우에만약 상품들의 리스트가 영수증의 한장에 기록 줄들보다 더 많으면스스로 인쇄된 영수증처럼 진행한다. 그체로 기업은 1장보다 더많은 장을 만약 다음 장의 Number를 첫장과 표시되고(PC씨스팀의 자동 공급) 판매,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코트도 같고 비고로: 베트남어 료 “**tiệp theo trang truoc – trang X/Y**” 즉 “**앞장의 계속- Page No. X/Y**” (그중에, X 는 종이장들의 순서 그리고 Y 는 그 송장의 총 장숫자).



5. 투자진행단계에 예금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우대;

Hà Nội 성 세국은 최근에 문세 제 4102/CT-TTHT 호로 2019 /01/24에 투자진행단계에 예금의 발생 이자에 대한 법인소득세우대 정책을 안내한다.

Hà Nội성 세무서의 안내에의하면 만약 기업은 창업투자허가서의 발급시점에 조세 우대조건들을 만족되면 법인세우대적용시간을기업의 실제 가동, 영업활동에 들어오고 비력 투자단계부터 각 투자주들의 불압된 자금의 은행예금부터 이자발생 소득 있소도 관련 없다. 건축단계의 예금 이자액을법인소득부담으로 계산해야하고 우대항목에 계산하지 않다 (법인소득세우대 적용시간과 면감세시간까지 포함한다).

Contacts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

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 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www.gran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 2019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granthornton.com.vn